

2021 출발운영지침

(STARTERS' INSTRUCTIONS)

본 지침은 공정하고 원활한 출발업무 수행을 위해
경마시행규정의 세부 집행기준으로서 적용하며
심판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2021. 02

한국마사회

목 차

제1호 업무총칙

제2호 경주마 조교심사

제3호 출발처분

제4호 출발준비 중 처리사항

제5호 출전마 장구파손 시 조치기준

제6호 경주마 출발보조

제7호 출발 보조장구(수단)에 관한 사항

제8호 출전마 진입에 관한 사항

제9호 출발대 칸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호 출발제외에 관한 사항

제11호 출발신호에 관한 사항

제12호 출발불성립에 관한 사항

제13호 출발위원의 통보에 관한 사항

제1호 : 업무총칙

1. 적용범위

- ① 출발업무와 관련하여 경마시행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른다.
- ② 누구든지 이 지침에 반하여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③ 이 지침은 출발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2. 해석

이 지침과 관련하여 출발위원 간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거나 지침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때는 출발수석위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3. 출발위원의 업무, 역할 및 근무수칙

- ① 출발위원 및 운영원은 항상 공정한 자세로 원활한 출발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수석위원은 업무 전체를 통괄하고 위원 및 운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현장통제를 한다. 규정 및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단하고 집행한다.
- ③ 위원은 수석위원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석위원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수석위원이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유로 항명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 ④ 운영원은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출발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이는 항상 정숙하고 집중하며 침착하게 행동한다.

4. 출발현장 통제

- ① 출발 현장에 있으려는 자는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떠날 때 까지 출발위원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② 필요 시 출발위원은 출발현장 입회를 금지할 수 있다.

제2호 : 경주마 조교심사**1. 조교심사의 종류**

경마시행규정 제50조와 관련하여 출발 및 주행 조교심사를 시행한다.

- ① 출발조교심사 : 운승, 진입, 자세, 출발·발진 등 조교상태 및 출발환경 전반에 대한 순치여부를 판정한다.
- ② 주행조교심사 : 출장, 출발, 주행상태 및 주행능력 등 경주마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2. 심사목적

조교순치 상태를 확인하고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

3. 심사범위

“기승자의 지시(보조자의 유도)에 따른 말의 복종”에 바탕을 두어 경주마에게 요구되는 조교순치 수준을 확인한다.

4. 심사개요

심사종류	출발심사	주행심사
심사형태	출발 진행과정 시행	경마시행 전 과정 시행
심사방법	출발 진행과정 심사	출장, 출발 및 1000m 주행
심사대상	신마, 출발재심마 등	신마, 주행재심마, 휴양마 등
심사위원	출발심사위원	주행심사위원
합격기준	순치 및 조교상태 양호한 말	조교상태 양호하고 소정의 주파기록을 달성한 말

5. 세부사항

심사방법 및 합격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 “조교심사시행기준집”에 따른다.

제3호 : 출발처분**1. 출발처분의 목적**

경주마의 출발조교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경주 질을 높인다.

2. 출발처분의 대상

출발처분은 조교가 충분치 못하여 악벽을 보인 말에게 행한다.

- ① 보조원의 제압으로 외형적 행동에 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 ② 불가항력적인 외력에 의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 ③ 승인된 보조장구(보조수단)를 사용하고 상태가 양호한 말은 그 장구(수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는다.

3. 출발처분의 종류

출발처분은 “주의”, “경고”, “재심” 으로 운용한다.

- ① 주의(注意) : 관계자에게 악벽발현을 인지시켜 상태확인 및 자발적인 보수조교를 권고하는 단계
- ② 경고(警告) : 차후 재차 악벽 발현 시 재심처분을 예고하며 강력한 보수조교를 요구하는 최종 유보단계
- ③ 재심(再審) : 보수조교 및 순치여부 확인을 위해 재심사를 지정하는 실질적인 출발처분 단계

4. 출발처분 기준의 구성

- ① 발현행위 특정 : 악벽정도, 상습정도, 복합정도를 고려한다.
- ② 참작사항 : 불가항력적인 외부자극 등을 고려한다.
- ③ 정책적 고려사항 : 기타 처분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5. 출발처분 사유서의 작성

- ① 출발처분 시는 별도의 “출발처분사유서” 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② 출발처분 사유서에는 처분내용, 처분사유, 악벽진단, 조교방법 등을 기재한다.

6. 세부적인 출발처분은 별도 “출발처분 기준집” 에 따른다.

제4호 : 출발준비 중 처리사항**1. 출발요원의 현장배치**

- ① 출발위원 : 후방업무 담당 및 교신담당은 출전마 입장통로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운영원 : 출발보조 담당은 입장통로 인근에, 뒷문 담당은 각 뒷문에 위치한다.
- ③ 기타 : 백기신호담당, 방마방지대 등 각 업무별 장소에 위치하며 특히, 운승공간 내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수의사, 장제사 등 : 현장 근무자는 정해진 곳에 위치하도록 확인하며 촬영 등 일시적 외부인은 사전에 출발위원이 대기 위치를 지정한다.

2. 출발집합 신호

출장한 기수에 대한 출발지점 집합신호는 출발대 상단의 경광 등으로 행한다.

3. 아래의 경우에는 기수의 하마 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장안 점검, 장구탈착, 기수부상의 현장치료
- ② 마체검사, 편자교정 등 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③ 기수 개인사유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

4. 장안점검, 장구탈착의 통제

- ① 장구의 변경, 탈착은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장교정 등 단순한 조정의 경우 기수의 요청이 있고 출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장안점검, 장구탈착은 기수가 자기책임 하에 시행한다.
- ④ 부득이하게 운영원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출발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료 후 기수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5. 입장보조장구의 처리

심판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장보조 장구를 착용한 경우 해당 장구는 출발지점에 도착한 즉시 출발위원이 장구를 해제한다.

제5호 : 출전마 장구파손 시 조치기준**1. 장구파손 시 조치**

- ① 출발 준비 중 장구 파손이 발생한 때는 원칙적으로 출발 제외 처리한다.
- ②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고 현장에서의 교체가 용이한 경우에는 심판위원의 허가를 얻어 예비장구로 교체할 수 있다.

2. 예비장구 범위

- ① 예비장구는 주행 중 안전사고, 현장교체의 난이도, 부담중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비치한다.
- ② 출발현장에 비치하는 예비장구는 아래와 같다.
 - 고비줄, 등자끈, 등자쇠, 쿨레세트(일반재갈), 고글 및 투명덧판, 채찍

3. 예비장구 교체 금지

- ① 쿨레세트(특수재갈), 안장, 복대 등 부담중량과 말의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예비장구로 교체하지 아니한다.
- ② 기수의 요청에 의한 단순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교체가 가능한 장구라도 교체시간, 교체 중 위험 등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예비장구 교체 시 유의사항

- ① 예비장구는 기수가 직접 교체하며 교체에 따른 책임은 기수에게 있다.
- ② 불가피하게 운영원의 도움을 받는 때에 기수는 교체과정 입회 및 교체 후 확인을 직접 해야 한다.
- ③ 예비장구가 없거나, 기수가 교체를 거부하거나, 말의 악벽 등으로 교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발제외 한다.

제6호 : 경주마 출발보조**1. 출발보조**

- ① 출발 현장에서 기수의 말 유도를 보조하는 운영원의 보조 행위를 통칭한다.
- ② 출발보조에는 운승보조, 진입보조, 자세보조, 기타보조가 있다.

2. 출발운영원

- ① 출발위원은 원활한 출발진행을 위하여 운영원으로 하여금 기수의 유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수는 자의적으로 운영원에게 지시 및 요청을 할 수 없다.
- ③ 기수는 운영원의 보조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기수가 운영원의 보조행위를 수용(요청)한 때에는 이에 대해 운영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조교사는 소속 조 관리사의 출발보조를 원할 때는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발보조의 범위

- ①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출전마의 운승, 진입, 자세 등 전 과정에 있어 기수의 말 유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출발보조는 원활한 진행과 최소한의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조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③ 운영원은 임의대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조행위를 하거나 주변사람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기수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출발보조의 내용

- ① 운승보조 : 출발지점 집합, 운승과정을 보조한다.
- ② 진입보조 : 출발대 진입, 보조도구(수단) 착용 등을 보조한다.
- ③ 자세보조 : 출발신호 전까지 기수의 자세대기를 보조한다.
- ④ 기타보조 : 장안정비, 사고 시 인마구호 등을 보조한다.

제7호 : 출발 보조도구(수단)에 관한 사항**1. 출발 보조도구(수단)**

- ① 출발 보조도구(수단)이란 출전마의 운승, 진입, 자세보조를 통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발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제 도구 및 보조수단을 말한다.
- ② 보조도구(수단)은 일시적, 보조적 범위에 한해 운용되며 말의 능력을 현저히 가감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출발위원은 사용가능 도구(수단)를 사전에 한정하며 이외의 것은 출발위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원칙

- ① 보조도구(수단)의 사용은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받거나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보조도구(수단)의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출발과정에 한해 사용된다.
- ③ 보조도구는 사전 순치조교를 통해 충분히 적응되어야 한다.
- ④ 보조수단은 통상적인 범위에 한하며 과도한 체벌이나 사람 또는 타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단은 허용될 수 없다.
- ⑤ 보조도구(수단)는 해당 조교사가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조교사의 사용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 여부는 출발위원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필요 시 조교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⑦ 보조도구(수단)는 임시수단으로써 일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출발조교의 대체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
- ⑧ 일회 사용(신청)도구의 종류, 개수 등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선별하여 사용(신청)한다.

3. 사용신청

조교사는 말의 조교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신청 하며, 신청 도구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보조도구(수단)의 종류

구 분	명 칭	사용 대상마 (유효마)	내 용 (대체수단)
보조 도구	눈가리개	일반적 진입 거부마	말의 눈을 가림 (마주보고 끌기)
	유도끈	윤승불량마	말의 유도 제어 (양쪽 고삐 잡이)
	로 프	진입, 접근 거부마	말의 전진 물이 (양쪽고삐 및 후구밀기)
보조 수단	밴 드	진입거부마	말의 후구 밀어 넣기 (후구 밀기)
	선진입	타마 불안에 따른 진입불량마	타마보다 먼저진입
	후진입	출발대 내 대기시간 경과 시 불안한 말	타마보다 늦게 진입
	채찍물이	접근거부마	후방에서 전진 물이 (양쪽고삐 및 후구밀기)
	양쪽 고삐	난폭 거부마 윤승불량마	2인이 고삐제어 (1인 양손고삐)
	격리윤승	타마 불안에 따른 윤승, 진입불량마	후방 격리윤승 및 진입유도 (눈가리개 유도)
	기수하마진 입	진입불량마	기수 하마 상태로 진입
	앞문개방진 입	진입불량마	앞문 개방 상태로 진입
	꼬리 받치기	자세불량마 (기립, 요동마)	진입 후 말의 꼬리를 위로 올려 받침

제8호 : 출전마 진입에 관한 사항

1. 출발위원회는 원활하고 안전한 출발진행을 위해 출전마의 진입 순서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출발위원회는 출전마의 진입순서 및 조치요령을 정한 “출발진행 전개도” 를 작성하여 운영원 등 관계자에게 사전 배포할 수 있다.
3. 경마일 출전마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입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진입불량마는 선진입하고 자세불량마는 후진입한다.
 - ② 진입 및 자세불량마는 제 상황을 판단하여 정한다.
 - ③ 장시간 대기애 따른 출발불량마는 후진입한다.
 - ④ 조교사, 기수의 요청에 있는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 ⑤ 끝번 신청마는 마지막에 진입한다.
 - ⑥ 상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불구하고 출발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출발위원회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방식의 진입보조 수단을 지시할 수 있다.

제9호 : 출발대 칸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출발위원은 경마시행규정 제7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말의 악벽 또는 출발대 문이 파손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해진 출발대 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정해진 출발대 칸을 변경하여 출발시킬 수 있다
- ② 출발위원은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발대 교체, 현장수리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호 : 출발제외에 관한 사항

1. 출발위원은 경마시행규정 제7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기수의 육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기승불가를 호소할 때도 출발제외 할 수 있다.
- ② 말의 사고, 질병 등으로 제외할 때는 수의사의 마체검사 결과 및 기수 의견을 종합하여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 ③ 출발대 내에서의 자세불량이 심하여 기수낙마, 전도 등 말의 부상이 의심될 때는 말을 밖으로 빼서 마체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상기 ③에 불구하고 자세불량 상황이 일시적으로 끝난 때에는 출발대 밖에서 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진행할 수 있다.
- ⑤ 어떤 말이 자세불량으로 제외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진입한 모든 말을 철수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다시 진행한다.
- ⑥ 규정 제77조 제4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출발 제외할 수 있다.
 - 장구 파손 시 예비장구로의 교체가 불가할 때
 - 편자 중 일부가 탈철되었으나 현장조치가 불가할 때
 - 기수(관리사)가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할 때
 - 기수(관리사)가 출발위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를 거부할 때
- ⑦ 발매마감 이후 출발제외가 발생한 때에는 심판의 “출발” 신호를 재 접수한 후 진행한다.

제11호 : 출발신호에 관한 사항**1. “출발신호”**

- ① 출발준비상태가 이뤄진 때에 출발위원의 조작에 의해 출발대 앞문을 열어 경주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출발신호는 공정한 출발을 위해 출발위원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발신호 시점에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출발위원은 최적의 시점에 출발신호를 내려 모든 출전마가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 ④ 기수는 내려진 출발신호에 맞춰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⑤ 출발위원의 조작에 의하지 않고 출발대 고장 또는 말의 돌진에 의한 앞문의 개문은 출발신호가 아니다.

2. 출발준비상태

- ① 출발준비상태 : 모든 출전마가 진입을 완료하고 외적장애 요인이 제거된 때 개별적인 출발불가능 상황이 없다면 출발 준비 상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개별적인 출발불가능 상황 : 출발대 내에서의 낙마, 전도, 장구 파손 등 기수의 통상적인 기승행위가 불가능한 상황
- ③ 기수는 출발대 진입 직후부터 출발신호가 있을 때 까지 자기 책임 하에 출발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④ 기수는 안장변이, 등자이탈 등 출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신호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발신호 보류 요청이 출발신호 시점과 맞물리거나 기타 사유로 보류 요청이 수락되지 못한 경우에도 출발신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기수는 말의 자세불량을 사유로 출발신호 보류 요청을 할 수 없다.

3. 출발신호 담당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출발신호차에 정위치한다.
- ① 보조도구 사용마, 끝번 마 및 보조자 철수마 등 특이사항
 - ② 출발대 앞문 잠금상태 및 번호판 배치 상태
 - ③ 무전기, 깃발 등 부대장비 및 전방의 백기요원 상황
 - ④ 주로상의 이물질 등 전방상황
 - ⑤ 기타 공정하고 완벽한 출발신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4. 출발대 스위치 고장 등 비상시에는 신호담당 출발위원의 지시 통제에 따라 후방통제위원 또는 출발운영원으로 하여금 비상스위치를 작동하여 출발신호를 내릴 수 있다.

제12호 : 출발불성립에 관한 사항

1. 출발위원회는 경마시행규정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기 및 무선 통신 등을 사용 출발불성립을 선언한다.

- ① 단, 말의 악벽, 기수의 과실 등에 의해 앞문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영향이 본인에게만 미친 때에는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
- ② 출발신호 시점과 맞물려 발생한 말의 악벽으로 낙마, 늦출발 등이 발생해도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
- ③ 출발신호 후에 늦출발, 고착, 낙마 등이 발생한 때에도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

2. 사례별 출발불성립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 앞문이 출발위원의 육안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늦게 열리고 이로 인해 해당 말이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
- ② 출발신호 전에 말의 돌진 등으로 해당 앞문이 강제로 개방되어 다른 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출발한 경우
- ③ 출발신호와 동시에 뒷문이 열려 말이 후진해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
- ④ 출발대 개문 후 앞문의 반동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
- ⑤ 보조원, 보조도구 등에 의해 상당한 방해를 받은 경우
- ⑥ 출발준비상태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 한 출발신호
 - 출전마 중 일부가 진입하지 아니한 때
 -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말만 진입한 때
 - 출발대 내에서 낙마, 전도, 장구파손 등이 된 때
- ⑦ 특정 말이 정해진 칸과 다른 칸에 진입해서 출발신호 된 때
[규정 제76조 사례 제외]
- ⑧ 정해진 출발지점과 다른 지점에서의 출발(경주불성립)

- ⑨ 발매 마감전의 출발신호
 - ⑩ 출발위원이 아닌 자에 의한 출발신호(비상조치 상황 제외)
 - ※비상조치상황 : 스위치 고장으로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원 등이 출발대에 장치된 비상 스위치를 작동하여 출발신호하는 경우
3. 출발위원과 신호담당 운영원과의 신호 불일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출발위원은 불성립(깃발신호)을 선언 했으나 운영원이 깃발을 흔들지 못해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에도 출발 불성립이다.
 - ② 출발위원의 불성립 선언이 없었음에도 신호담당 운영원이 깃발을 흔들어 말의 주행을 방해한 때는 경주불성립으로 한다.
 - ③ 출발위원이 불성립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불성립 표시(깃발 신호)를 하지 못해 경주마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에는 경주불성립으로 한다.
4. 출발위원은 출발불성립 상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명확한 출발불성립 상황이 있었음에도 출발위원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경주가 계속된 때에는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6. 출발신호 담당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출발위원은 자기 판단 하에 출발불성립을 판단하여 선언할 수 있다.
- ① 신호담당 위원이 인지한 때는 신속하게 불성립을 선언한다.
 - ② 후방통제 위원이 인지한 때는 직접 예비청기 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불성립을 선언한다.
 - ③ 상기 각각의 경우 무선통신 담당위원은 즉시 심판위원회에 불성립 상황을 통지한다.
7. 출발불성립에 의한 재출발 여부는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호 : 출발위원의 통보에 관한 사항

1. 출발위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시점에 심판위원에게 통보한다.
 - ① 출전마가 출발진행 중 진입(접근)불량, 자세불량, 출발불량, 발진불량 등 악벽을 보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경주 종료 후 통보한다.
 - ② 출발신호가 내려졌으나 기수가 고의로 말을 출발 시키지 않거나 늦출발 시킨 때에는 해당 경주 종료 후 통보한다.
 - ③ 규정 제76조에 따른 출발대 칸 변경을 하는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
 - ④ 규정 제77조에 따른 출발제외를 하는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
 - ⑤ 규정 제79조에 따른 출발불성립을 선언한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
 - ⑥ 기수가 의도적으로 출발진행 방해, 지연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공정한 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는 때는 적시에 통보한다.
 - ⑦ 그 밖에 심판위원에게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적시에 통보한다.
2. 경마개최위원장 또는 심판위원의 판단, 승인,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적시에 심판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